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78호, 2025. 5. 27. 공포, 2025. 11. 28. 시행)됨에 따라,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·절차·기간 및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등) ① 법 제49조의9제1

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관 소개서
2. 운영계획서
3. 주요업무 실적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기관의 적합성
2. 운영계획의 적정성
3. 사업추진의 적극성

③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의 지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

2.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및 공시의 지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

3. 그밖에 법 제49조의9제2항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

신청기관		설립연월일	
대표자	(한글) (한자)	전화번호	
기관주소			
담당자	(담당부서)	(성명)	
	(E메일)		
	(사무실 전화)		
	(핸드폰)	(FAX)	

본 기관은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49조의9(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)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지정을 원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본 기관이 평가를 거쳐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지정될 시 본 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기재한 업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령 등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, 이를 위반하거나 본 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(기관명)

(대표자)

(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※ 첨부서류

1. 기관 소개서
2. 운영계획서
3. 주요업무 실적
4. 그밖의 관련 증빙서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(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</u> <u>의 지정 및 업무 등) ① 법 제49</u> <u>조의9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</u> <u>회사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</u> <u>라 한다)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</u> <u>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</u> <u>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</u> <u>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</u> <u>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1. 기관 소개서</u> <u>2. 운영계획서</u> <u>3. 주요업무 실적</u> <u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</u> <u>따라 지원센터 지정 신청을 받</u> <u>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</u> <u>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</u> <u>하여야 한다.</u> <u>1. 기관의 적합성</u> <u>2. 운영계획의 적정성</u> <u>3. 사업추진의 적극성</u> <u>③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</u> <u>으로 한다.</u> <u>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</u> <u>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</u>

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
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49조의9제2항제7호에
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
말한다.

1.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
자자문회사의 등록의 지원 및
이에 부수하는 업무

2.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
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
평가 및 공시의 지원 및 이에
부수하는 업무

3. 그밖에 법 제49조의9제2항
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및 이
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국토교
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업무